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13
----------	------

2022년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3. 상정일자 :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6월 1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 제안이유

가.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은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교육 등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민간위탁으로 4개의 센터(1~4권역 센터)를 운영 중인 사무로

나. 4권역(중부)센터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22.9.30)됨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센

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최초 동의 '21. 6. 21.)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사무형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필요성

- 2020년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 6.3%(중양값 5.7), 우울증상유병률 3.2%(중양값 2.6), 스트레스 인지율 29.5%(중양값 26.2) 등 대부분의 정신건강문제 지표가 전국 중양값보다 높아 대책이 요구됨
-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심리지원센터의 연간 이용 인원이 6,450명('18년) → 17,359명('19년) → 19,051명('20년) → 26,515명('21년)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울시민의 심리지원 수요가 높아 '21년 추가 설치된 제4권역 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공공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지역별 심리 서비스 제공 불균형 완화가 필요함

다. 위탁사무 내용

-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동료 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 대상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기간 : '22. 10. 1. ~ '24. 12. 31.(2년 3개월)

마.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바. 소요예산 : 101,005천원('22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센터의 설치)

-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 및 비영리법인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TF팀 박혜령 (☎ 2133 - 7548)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광모)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및 사무의 내용

- 본 동의안은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에 관한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22.9.30.) 도래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¹⁾에 의거 재위탁²⁾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심리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³⁾ 및 제7조⁴⁾등에 따라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의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기관⁵⁾으로 현재 총 4개(동남, 동북, 서남, 중부)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별표1 참고).
- 시장이 재위탁하고자 하는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의 구체적 사무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3)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4)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 5)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동료 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 대상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참고로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는 ‘21년 6월에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원안가결)를 받았고, 이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행복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21년 10월부터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위6)>

- 21.02.25. 민간위탁(신규) 방침 수립
- 21.04.0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적정)
- 21.06.21.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 원안가결
- 21.07.19.~21.07.30.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1.08.06.~21.08.12. 수탁기관 모집재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1.08.26.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1.09.01.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결과 공고
- 21.09.30. 민간위탁 협약 체결
 - 수탁기관 : 행복있다 사회적협동조합
 - 위탁기간 : 21.10.01~22.09.30.(1년)⁷⁾
 - 21년 사업비 : 금96,420천원⁸⁾

6) 자료: 보건의료정책과(2021.09.28.),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센터 민간위탁협약체결 계획.

7) 서울심리지원 센터(1~3권역)는 기존의 시범사업(2015~2017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2018년 4월

2 민간위탁 대상여부 검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⁹⁾에 시장은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¹⁰⁾ 및 제7조¹¹⁾에서는 심리지원센터의 권역별 설치와 센터운영의 위탁을 시장의 소관 사무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9호¹²⁾에서

에 정식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였음.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 센터의 경우,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개소하였으나 최초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는 2021년 10월에 발간된 「공공심리지원 전달체계 모형 개발 연구」(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21.10.)의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공공심리지원 전달체계 모형을 구축하고자 2021년도에 4개 센터(1~4권역)의 위·수탁 협약기간을 모두 1년으로 하였다고 함.

- 8) 자료: 보건의료정책과(2021),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센터(중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 10)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심리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11)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
 -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 1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¹³⁾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의 심리지원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사무의 기준이나 추진근거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 및 운영성과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2.04.27.)에 의하면, 코로나19 유행 전후(2019~2021년)의 주요 건강행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우울감¹⁴⁾, 스트레스¹⁵⁾은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보건정책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¹⁶⁾.
- 특히, 서울시민의 우울감 경험률¹⁷⁾과 스트레스 인지율¹⁸⁾의 경우 17개 시도 중 각각 3위, 2위로 높게 나타나¹⁹⁾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

1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 | |
|---------------------------------|--------------------------|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14) 우울감 경험률은 ‘19년 5.5%에서 ‘20년 5.7%로 소폭 증가(0.2%p)하였다가 ‘21년 6.7%까지 증가(1.0%p)함.

15) 스트레스 인지율은 ‘19년 25.2%에서 ‘20년 26.2%로 증가(1.0%p)하였고, ‘21년에도 그 수준이 유지됨.

16) 자료: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2.04.27.), “코로나19 유행 후 신체활동, 정신건강, 주요 만성질환 악화”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19398

17) 2020년 기준 우울감 경험률은 인천이 7.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경남 6.4%, 서울 6.3%순으로 높게 나타남.

18) 2020년 기준 스트레스 인지율은 인천이 32.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서울 29.5%, 경기 29.0%순으로 높게 나타남.

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²⁰⁾ 다룰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됨.

-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3항²¹⁾에 따라 제출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²²⁾’ 자료 등에 의하면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의 경우, 개인상담 및 소집단교육의 프로그램 만족도(5점 만점)가 각각 4.8점, 4.6점으로 나타나 4개 센터의 평균 점수²³⁾ 이상을 보였음.
- 그러나 개인상담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²⁴⁾ 센터 이용자가 개인상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는지, 얼마나 변화했는지, 어떤 점에서 도움을 얻었는지 등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음.
- 다만, 소집단 교육 및 상담 참여자의 사전-사후평가²⁵⁾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감정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별표2 참고)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 문제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짐.
- 이외에도 ‘서울심리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 ‘일반복지관 프로그램과

19) 자료: 질병관리청(2021.04.), 2020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요약), p17-p18.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https://chs.kdca.go.kr>)

20)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1.10.), 공공심리지원 전달체계 모형 개발 연구, p1.

2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② <중략>.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2) 자료: 보건의료정책과(2022), 서울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성과보고서, p5.

23) 2021년 기준 서울심리지원센터(4개 센터)의 개인상담 및 소집단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평균 점수는 각각 4.6점, 4.6점으로 나타남.

24) 자료: 행복잇다 사회적협동조합(2022.01.08.), 2021년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센터(중부) 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개인 상담은 단기 상담 위주로 진행하여 사전-사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함.

25) 자료: 행복잇다 사회적협동조합(2022.01.08.), 2021년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센터(중부) 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의 차별성' 등이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²⁶⁾한 바 있는데,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연계나 특성화 사업의 추진²⁷⁾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대상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²⁸⁾에 의거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²⁹⁾ 및 제7조³⁰⁾에서 심리지원센터의 권역별 설

26)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p45.

- 심리지원센터 서남센터 관련, 정신건강관련 프로그램이 일반복지관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으며 심리지원센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심리지원센터는 민간과 차별성도 없고 센터의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 하였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과 연계하여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27) 자료: 행복잇다 사회적협동조합(2022.01.08.), 2021년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센터(중부) 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유관기관과의 연계 :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기관으로부터 63건의 소개 및 의뢰를 받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동사무소 등에 5건의 소개 및 의뢰를 함.
- 특성화 사업 추진 : 청년 소상공인 방문상담 컨설팅, 경동시장 등 시니어 소상공인 심리지원 수요조사, 소상공인 코로나 심리지원 교육 등을 추진함.

2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9)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리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30)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치와 센터운영의 위탁을 시장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심리지원 서비스는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표준화된 서비스의 질 관리가 필요³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특수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향후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심리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평가체계의 적용³²⁾을 통해 각 센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서울심리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사후관리도 함께 요구된다 할 것임.

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31)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1.10.), 공공심리지원 전달체계 모형 개발 연구, p18, p31.

32)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1.10.), 공공심리지원 전달체계 모형 개발 연구, p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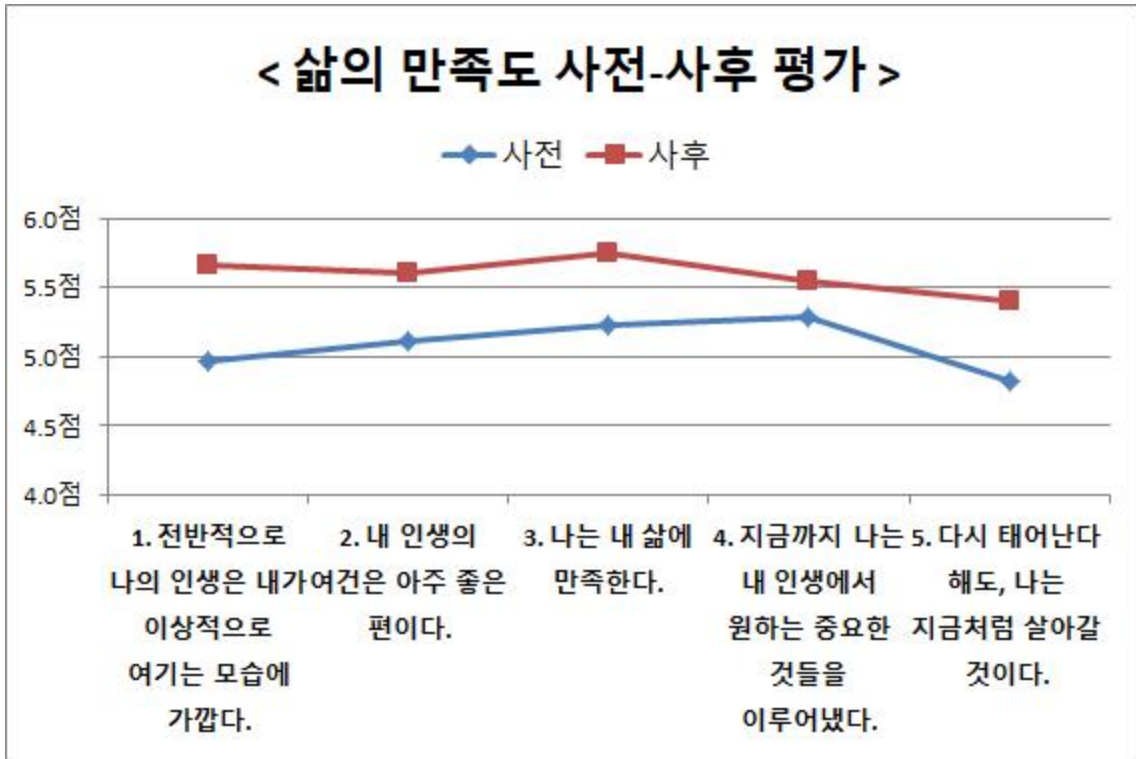
<별표 1>

<서울심리지원센터 시설현황>

시설명칭	운영주체	위탁기간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서울심리지원 제1권역 센터 (동남)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2022. 4. 1. ~ 2024. 12. 31.	송파구	379.8m ²	사무실, 상담실, 대기실, 집단상담실 등
서울심리지원 제2권역 센터 (동북)	덕성 여자대학교	2022. 4. 1. ~ 2024. 12. 31.	도봉구	205.7m ²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 센터 (서남)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2022. 4. 1. ~ 2024. 12. 31.	양천구	166.2m ²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 센터 (중부)	행복있다 사회적협동조합	2021. 10. 1. ~ 2022. 9. 30.	동대문구	200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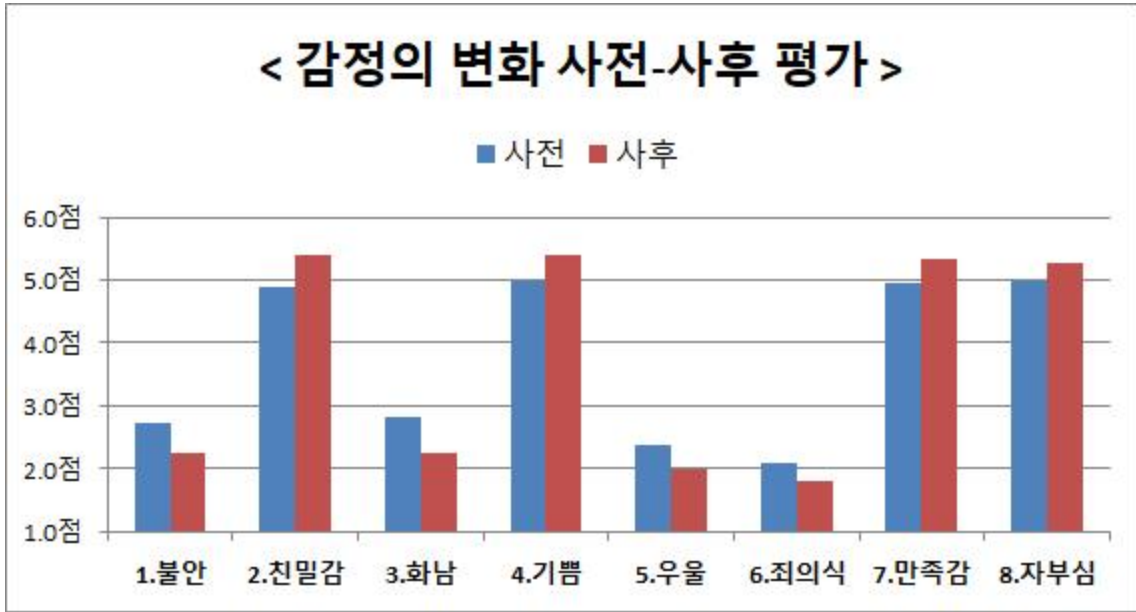
<별표 2>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소집단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측정 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N=35)	1. 이상적	4.97	1.654	5.66	1.349	-5.351***
	2. 여건	5.11	1.231	5.60	1.241	-4.364***
	3. 만족	5.23	1.262	5.74	1.146	-3.431**
	4. 이룸	5.29	1.202	5.54	1.336	-1.950
	5. 다시	4.83	1.562	5.40	1.612	-2.953**

*p<.05 , **p<.01 , ***p<.001



측정 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감정의 변화 (N=32)	1. 불안	2.73	1.398	2.24	1.300	3.689**
	2. 친밀감	4.88	1.289	5.41	.946	-2.871**
	3. 화남	2.81	1.306	2.25	1.107	3.626**
	4. 기쁨	4.97	1.282	5.41	1.132	-2.946**
	5. 우울	2.38	1.362	2.00	1.136	3.832**
	6. 죄의식	2.09	1.118	1.81	.931	2.738*
	7. 만족감	4.94	1.243	5.34	1.234	-3.040**
	8. 자부심	4.97	1.470	5.28	1.746	-1.241

*p<.05 , **p<.01 , ***p<.001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13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은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교육 등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민간위탁으로 4개의 센터(1~4권역 센터)를 운영 중인 사무로
- 나. 4권역(중부)센터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22.9.30)됨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최초 동의 '21. 6. 21.)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사무형 위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필요성

- 2020년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 6.3%(중양값 5.7), 우울증상유병률 3.2%(중양값 2.6), 스트레스 인지율 29.5%(중양값 26.2) 등 대부분의 정신건강문제 지표가 전국 중양값보다 높아 대책이 요구됨
-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심리지원센터의 연간 이용 인원이 6,450명('18년) → 17,359명('19년) → 19,051명('20년) → 26,515명('21년)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울시민의 심리지원 수요가 높아 '21년 추가 설치된 제4권역 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공공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지역별 심리 서비스 제공 불균형 완화가 필요함

다. 위탁사무 내용

-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동료 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 대상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기간 : '22. 10. 1. ~ '24. 12. 31.(2년 3개월)

마.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바. 소요예산 : 101,005천원('22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센터의 설치)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TF팀 박혜령 (☎ 2133 - 7548)